



반부패 정책

Leading A Sustainable Future With Green Cable Solutions

반부패 정책

I. 개요

1. 제정목적

LS전선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부패와 관련된 글로벌 법규 및 Standard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본 정책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에 피해를 주고 구성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인 부패 및 뇌물 관행의 발생을 방지하고, 윤리·도덕적 가치 기준에 따라 적극 실천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범위는 LS전선 구성원으로 한다. 출자법인을 비롯하여 LS전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본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II. 기본원칙

(1) 법령 준수

모든 거래에서 뇌물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현지 법령 또는 국제 표준을 준수한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글로벌 반부패 법규, 표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2) 뇌물 수수 및 공여

국가기관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구성원 등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약속 또는 제안하지 않는다. 또한, 통상적인 절차나 용역이 보다 신속히 진행되도록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목상의 급행료*나 업무촉진비의 제공은 금지된다.

(3) 부정청탁

사업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해관계자가 회사 또는 협력사와 부당 거래를 하도록 알선, 청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거래처나 협력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선물 및 접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는 뇌물수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건전한 업무 관계 형성을 위한 선물 및 접대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특유의 법령, 문화, 관행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취한 경우에는 내부 관리 정책에 따라 조치한다.

(5) 기부금 또는 후원금

기부금 또는 후원금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어떠한 구성원도 회사의 이름으로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정당, 정치인 등에게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 정부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소정의 뇌물을 지불하여 일상적인 절차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행정상 지연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

문서명	반부패 정책	버전	1.0
제정일자	2024. 7. 24	개정일자	-
제개정부서	법무/Compliance팀	관리부서	ESG경영팀

참고 문헌

정책	문헌 상세
반부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미국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영국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UN 부패방지협약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